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5. 3. 8.  
행 정 위 원 회

### 1. 審 査 經 過.

- 가. 제출일자및 제출자 : 2005년 2월 18일 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7일  
제1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#### 가. 개정이유

재난대비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재난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소요 인력과 공무원노조 전담인력,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,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관련 전담인력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“1,275명”에서 “1,291명”으로 변경  
- 집행기관의 정원 : “1,250명”에서 “1,266명”으로 변경
- 제3조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에서 “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로 정하며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변경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 -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(2004.12.18)
  - ※ 재난전담기구 설치로 인한 본청기구 및 인력보강(1개과 9명/5급1,7급3,8급3,9급2)
  - ※ 정원조례에 직급별정원을 별표로 삽입하고 정원증가시 추가소요경비 적시토록 의무화
- 공무원노조 전담기구 · 인력보강지침(2004.11)
  - ※ 공무원노조 전담인력 보강(2명/8급1,9급1)

-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·정원 보강지침(2005.2)
  - ※ 주택평가 전담인력 보강(4명/7급1,8급3)
-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기구·정원 보강지침(2005.2)
  - ※ 피해접수 및 조사 전담인력 보강(1명/7급1)
  - ※ 존속시한 : 2006. 12. 31까지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: 김찬재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공무원 노조 활동대응, 개별주택가격평가,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,
- 나. 소요인력의 책정은 재난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은 2004. 12. 행정자치부의 “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”에 따른 “조직관리지침”에 의하여,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 인력은 2004. 11. 행정자치부의 “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·인력보강지침”에 의하여,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은 2005. 2 행정자치부의 “지자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·정원보강지침”에 의하여,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인력은 2005. 2. 행정자치부의 “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지자체 기구·정원보강지침”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인력책정으로 사료되며,
- 다. 재난관리인력은 2005. 1. 25. 공무원단체지원 인력은 2004. 11. 20. 서울특별시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, 개별주택가격평가인력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인력은 2005. 2. 7 서울특별시에 정원승인이 요청된 바 있으며 승인될 것으로 사료되며,
- 라. 정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비용소요추계서와 같이 증원되는 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328,565천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, 인건비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면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인건비 예산 54,435,237천원중 50,652,472천원을 집행하고 3,782,765천원이 불용되었는 바, 불용된 원인은 30~40명으로 추정되는 결원에 있으며, 2005년도의 경우도 예년의 경우를 볼때 30~40명의 결원이 예상되므로 예산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마. 제3조에서 별표1로 「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」를 두었는 바 이는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와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자율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됨.

다만,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종전의 정원대로 책정하였으므로 총계 25명을 27명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修正案 要旨

##### 가. 수정요지

- 안 제2조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감소하고, 제2조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명 증원
- 안 제3조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구분청 정원이 2명 감소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수정

##### 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2조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66명에서 1,264명으로 하고, 제2조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7명으로 수정함.
- 안 제3조의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 
“총계 구분청란의 962명을 960명으로,  
일반직 계 구분청란의 632명을 630명으로,  
6급 구분청란의 134명을 133명으로,  
7급 구분청란의 196명을 195명으로 하고  
총계 구의회사무국란의 25명을 27명으로,  
일반직 계 구의회사무국란의 12명을 14명으로,  
6급 구의회사무국란의 2명을 3명으로,  
7급 구의회사무국란의 3명을 4명으로 수정함.

#### 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142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3.7.

제 출 자 : 김영진 의원

### 1. 수정이유

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 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구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을 증원하여 수정

### 2. 주요내용

- 안 제2조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66명에서 1,264명으로 하고, 제2조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7명으로 함.
- 안 제3조의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“총계 구분청란의 962명을 960명으로, 일반직 계 구분청란의 632명을 630명으로, 6급 구분청란의 134명을 133명으로, 7급 구분청란의 196명을 195명”으로 하고, “총계 구의회사무국란의 25명을 27명으로, 일반직 계 구의회사무국란의 12명을 14명으로, 6급 구의회사무국란의 2명을 3명으로, 7급 구의회사무국란의 3명을 4명”으로 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 
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 
한다

제2조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66명을 1,264명으로 하고,

제2조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7명으로

제3조의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

“총계 구분청란의 962명을 960명으로, 일반직 계 구분청란의 632명을 630명으로,  
6급 구분청란의 134명을 133명으로, 7급 구분청란의 196명을 195명”으로 하고,  
“총계 구의회사무국란의 25명을 27명으로, 일반직 계 구의회사무국란의 12명을  
14명으로, 6급 구의회사무국란의 2명을 3명으로, 7급 구의회사무국란의 3명을  
4명”으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1,275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50명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1,291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66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25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1,291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64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27명</u></p>

개정안 -[별표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	총계	구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291	<u>962</u>	<u>25</u>	92	212
정무직 계	1	1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935	<u>632</u>	<u>12</u>	79	212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8	24	2	10	22
6급	172	<u>134</u>	<u>2</u>	14	22
7급	269	<u>196</u>	<u>3</u>	26	44
8급	309	203	2	23	81
9급	119	69	2	5	43
별정직 계	12	6	6		
6급상당	1	1			
7급상당	7	5	2		
8급상당	3		3		
9급상당	1		1		
기능직 계	343	323	7	13	
기능6급	5	5			
기능7급	12	12			
기능8급	35	33		2	
기능9급	86	80	3	3	
기능10급	205	193	4	8	

수정안 -[별표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	총계	구분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291	<u>960</u>	<u>27</u>	92	212
정무직 계	1	1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935	<u>630</u>	<u>14</u>	79	212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8	24	2	10	22
6급	172	<u>133</u>	<u>3</u>	14	22
7급	269	<u>195</u>	<u>4</u>	26	44
8급	309	203	2	23	81
9급	119	69	2	5	43
별정직 계	12	6	6		
6급상당	1	1			
7급상당	7	5	2		
8급상당	3		3		
9급상당	1		1		
기능직 계	343	323	7	13	
기능6급	5	5			
기능7급	12	12			
기능8급	35	33		2	
기능9급	86	80	3	3	
기능10급	205	193	4	8	

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재난대비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재난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소요인력과 공무원노조 전담인력,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,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관련 전담인력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"1,275명"에서 "1,291명"으로 변경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"1,250명"에서 "1,266명"으로 변경

나. 제3조 "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"에서 "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로 정하며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"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(2004.12.18)
- ※ 재난전담기구 설치로 인한 본청기구 및 인력보강(1개과 9명/5급1,7급3,8급3,9급2)
- ※ 정원조례에 직급별정원을 별표로 삽입하고 정원증가시 추가소요경비 적시토록 의무화
- 공무원노조 전담기구 · 인력보강지침(2004.11)
- ※ 공무원노조 전담인력 보강(2명/8급1,9급1)
-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· 정원 보강지침(2005.2)
- ※ 주택평가 전담인력 보강(4명/7급1,8급3)
-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기구 · 정원 보강지침(2005.2)
- ※ 피해접수 및 조사 전담인력 보강(1명/7급1)

※ 존속시한 : 2006. 12. 31까지

나. 예산조치 : 확보되었음(별첨 비용소요 추계서)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라 기타참고사항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05.2.8~2.13(6일간)

따로붙임 : 1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(안) 1부.

2. 비용소요 추계서 1부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“1,275명”을 “1,291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66명

제3조중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을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로 정하며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정원중 1명(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전담인력)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	개
행	정
안	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                    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275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50명</u>                      2. 생략</p> <p>제3조(정원관리 기관·직급별 정원)                      구본청, 구의회사무국, 직속기관 등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<u>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                    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291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66명</u>                      2. 현행과 같음</p> <p>제3조(정원관리 기관·직급별·직렬별 정원)                      구본청, 구의회사무국, 직속 기관 등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<u>직급별 정원은 별표로</u>  <u>정하고 직급별·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[별표 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	총계	구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291	962	25	92	212
정무직 계	1	1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935	632	12	79	212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8	24	2	10	22
6급	172	134	2	14	22
7급	269	196	3	26	44
8급	309	203	2	23	81
9급	119	69	2	5	43
별정직 계	12	6	6		
6급상당	1	1			
7급상당	7	5	2		
8급상당	3		3		
9급상당	1		1		
기능직 계	343	323	7	13	
기능6급	5	5			
기능7급	12	12			
기능8급	35	33		2	
기능9급	86	80	3	3	
기능10급	205	193	4	8	

## 비용소요 추계서

#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(2004.12.18)
-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·인력보강지침(2004.11)
-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·정원 보강지침(2005.2)
-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기구·정원 보강지침(2005.2)

### 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1담당관 22과 → 1담당관 23과(재난안전관리과 신설)
- 총정원 1,275명 → 1,291명

### 3. 비용소요 내역 — 328,565천원

(단위 : 천원)

비용소요내역			
구분	소요비용	산출근거	산출금액
총계	328,565		
인건비소계	294,365		
기본급	142,026	9급 : 617300원*12개월*3명	22,222,800
		8급 : 703900원*12개월*7명	59,127,600
		7급 : 792500원*12개월*5명	47,550,000
		5급 : 1093800원*12개월*1명	13,125,600
		소 계	142,026,000

수당소계	54,184		
기말수당	23,671	9급 : 617300원*50%*4회*3명	3,703,800
		8급 : 703900원*50%*4회*7명	9,854,600
		7급 : 792500원*50%*4회*5명	7,925,000
		5급 : 1093800원*50%*4회*1명	2,187,600
		소 계	23,671,000
정근수당	11,836	9급 : 617300원*50%*2회*3명	1,851,900
		8급 : 703900원*50%*2회*7명	4,927,300
		7급 : 792500원*50%*2회*5명	3,962,500
		5급 : 1093800원*50%*2회*1명	1,093,800
		소 계	11,835,500
초과근무	18,677	9급 : 5560원*15시간*12개월*3명	3,002,400
		8급 : 6200원*15시간*12개월*7명	7,812,000
		7급 : 6919원*15시간*12개월*5명	6,227,100
		5급 : 9088원*15시간*12개월*1명	1,635,840
		소 계	18,677,340
정액급식비	24,960	공통사항:130,000원*16명*12개월	24,960,000
교통보조비	23,880	9급 : 120,000원*12개월*3명	4,320,000
		8급 : 120,000원*12개월*7명	10,080,000
		7급 : 130,000원*12개월*5명	7,800,000
		5급 : 140,000원*12개월*1명	1,680,000
		소 계	23,880,000

명절휴가비	17,753	9급 : 617300원*75%*2회*3명	2,777,850
		8급 : 703900원*75%*2회*7명	7,390,950
		7급 : 792500원*75%*2회*5명	5,943,750
		5급 : 1093800원*75%*2회*1명	1,640,700
		소 계	17,753,250
가계지원비	29,589	9급 : 617300원*50%*5회*3명	4,629,750
		8급 : 703900원*50%*5회*7명	12,318,250
		7급 : 792500원*50%*5회*5명	9,906,250
		5급 : 1093800원*50%*5회*1명	2,734,500
		소 계	29,588,750
연가보상비	1,973	9급 : 617300원*1/24*4일*3명	308,640
		8급 : 703900원*1/24*4일*7명	821,170
		7급 : 792500원*1/24*4일*5명	660,400
		5급 : 1093800원*1/24*4일*1명	182,300
		소 계	1,972,510
물건비	34,200		
직책급업무	1,200	5급 : 100,000원*12개월*1명	1,200,000



직급보조비	24,000	9급 : 105,000원*12개월*3명	3,780,000
		8급 : 105,000원*12개월*7명	8,820,000
		7급 : 140,000원*12개월*5명	8,400,000
		5급 : 250,000원*12개월*1명	3,000,000
		소 계	24,000,000
특정업무	9,000	9급 : 50,000원*12개월*3명	1,800,000
		8급 : 50,000원*12개월*7명	4,200,000
		7급 : 50,000원*12개월*5명	3,000,000
		소 계	9,000,000